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업도시법령은 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사업성 분석자료의 조사·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시행규칙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사업성 분석 전문기관에 법률·회계·경영 분야의 전문기관을 포함함으로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을 포함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 분석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경영·경제 또는 도시·부동산 분야 연구기관

②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조사·분석 전문기관)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 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 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민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 구원을 말한다.	제5조(조사·분석 전문기관) ①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국 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을 말한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 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관광연 구원 3.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 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 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 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 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 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신 설>

의한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
는 회사

6.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
영리법인으로서 경영·경제
또는 도시·부동산 분야 연구
기관

②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이란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
지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